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목 차

최근 동향..... 2

- 우크라이나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변화
- 중국, 원자력관련 수출통제 강화
- 대만, 이란 및 북한에 대한 무역제한 강화

불법 밀매..... 5

- 그루지아에서 압류된 고농축우라늄
- 콩고 공화국, 핵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 조사 요구
- 일본 야마하 모터社, 중국에 무인항공기 불법수출혐의로 벌금형

국제지원 프로그램 8

- 카자흐 세관 현대화에 대한 EU 프로젝트 완료
- 미국, 핵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확대
- 키르기스스탄, 수출과 국경통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원 수락

국제수출통제체제..... 11

- 2006년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 개요

금수 및 제재 14

- 일본정부, 이란에 대한 불법수출로 Seishin社에 수출금지 처분

국제 동향..... 15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흑해 하모니 구상에 참여

특별 기고..... 16

- 동아시아 수출통제 업데이트 : 핵심 공급국 및 경유국의 지속적 제도개선

최근 동향

우크라이나 수출통제제도의 최근 변화

빅터 유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07년 3월 5일, 정부령 2007년 제 180호 “군사기술 협력정책 및 수출통제 합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대통령 산하의 군사기술협력 및 수출통제정책 위원회(CMTCEC)를 해산하고 군사기술 협력정책 및 수출통제 합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D)의 실무기구이다. 이 령에는 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초대 의장인 호로시코브스키를 이 통합위원회의 의장에 임명하는 것을 포함, 위원 명단이 담겨있다.[1] 38세의 호로시코브스키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경제유럽통합부 장관을 역임(2002.12-2004.1)하기도 하였으며 대통령령 1062/2006에 의거

2006년 12월 11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D)의 첫 의장 자리에 올랐다.[2,3](아래 위원회 리스트 참조)

본 정부령은 2006년 11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DC)에서 수출통제정책위원회(CMTCEC)를 개편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2006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 1149호에 의해 승인되어 국제군사기술 협력과 수출통제는 대외군사정책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관한 효율적인 국가적 정책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DC)는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거, 수출통제정책위원회(CMTCEC)를 해산시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DC) 산하 합동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 개편은 우크라이나 수출 통제시스템 이행을 맡고 있는 주요 정부기관인 SSEC(Ukraine's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 군-기술 협력정책과 수출통제에 관한 통합 위원회

이 름	직 위	위원회 직위
Valeriy Khoroshkovshiy	First Deputy Secretary of the NSDC	Head
Volodimir Rizhov	First Deputy Minister of Industrial Policy	Deputy Head
Sergiy Khimchenko	Chief of the NSDC Apparatus Department on Military Security Issues	Secretary
Vyacheslav Boguslaev	Deputy Head of the Verkhovna Rada's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Issues	Member
Sergiy Bondarchuk	Director General of the state Company on Export/Import of Military and Special-purpose Goods and Services	Member
Andriy Veselovskiy	Deputy Foreign Minister	Member
Oleksandr Galaka	Head of the 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under the Ministry of Defense	Member
Oleksandr Grishutkin	First Deputy Chairman of the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Member
Valeriy Komarov	Frist Deputy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Space Agency	Member
Gennadiy Moskal	Deputy Head of the Security Service	Member
Anatoliy Myarkovskiy	Deputy Minister of Finance	Member
Volodimir Pavlenko	Frist Deputy Minister of the Cabinet of Ministers	Member
Andriy Pshenichniy	Frist Deputy Head of Exteral Intelligence Service	Member
Sergiy Romanyuk	First Deputy Minister of Economy	Member
Volodimir Tereshchenko	Deputy Minister of Defense	Member
Ruslan Cherkasskiy	First Deputy Head of the state Customs Service	Member
Mikhaylo Yursa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s Main Service 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Member

새롭게 발족하게 되는 이 위원회는 최소 한달에 한번 소집될 예정이다. 이는 수출통제법안의 입법화 추진 및 정책 제안과 정부 관계부처간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 등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국(SSEC)을 지원하고 수출 통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1]

출처: [1] 우크라이나 대통령령 180/2007 호(2007년 3월 5일) "O Mezhdomstvennoy komissii po politike voyenno-tekhnicheskogo sotrudnichestva i eksportnogo kontrolya" (군사기술협력정책과 수출통제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v.ua/ru/documents/5833.html>>. [2] "Khoroshkovskiy, Valeriy Ivanovich," proUA.com, <<http://baza.proua.com/p/39>>. [3] 우크라이나 대통령령 1064/2006 호(2006년 12월 11일), "O naznachenii V. Khoroshkovskogo Pervym zamestitelem Sekretarya Soveta natsionalnoy bezopasnosti i oborony Ukrainy"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의회 초대 차관 V. Khoroshkovskiy 의 약속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v.ua/ru/documents/5373.html>>. [4] 우크라이나 대통령령 1149/2006 호(2006년 12월 28일), "O reshenii Soveta natsionalnoy bezopasnosti i oborony Ukrainy ot 17 noyabrya 2006 goda "O Komitete po politike voyenno-tekhnicheskogo sotrudnichestva i eksportnomu kontrolyu pri Prezidente Ukrainy" (2006년 11월 17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군사기술협력과 수출통제정책에 관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원회에서"의 결정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v.ua/ru/documents/5515.html>>.

중국, 원자력관련 수출통제 규정 강화

중국 국무원은 최근 2개의 원자력 관련 수출 통제규정을 개정했다.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 규정(이하 핵물질 수출규정)은 2006년 11월 9일 개정되어 2006년 12월 1일 국무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핵물질과 장비 및 핵시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비핵 물품의 이전을 통제한다.[1,2,3] 이중용도 핵 제품과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 규정(이하 원자력 이중용도 수출규정)은 2007년 1월 26일자 국무부령에 의해 개정되었고, 2007년 2월 16일 공포되었다. 양 규정의 개정을 통해 중국은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NSG와 UN 안보리 결의안 1540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양 규정의 제정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대폭적 개정으로서(핵물질 수출규정은 1997년, 원자력 이중용도 수출 규정은 1998년에 각각 제정)[7,8] 중국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HEU) 확산, 민감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제조기술, 핵 테러, 환적과 기타 통제, 기술의 무형이전(ITT) 등 일련의 복잡한 비확산 이슈들을 정식으로 규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슈들이 이전에는 행정 명령에 의해 다루어졌으나, 정식 규정화됨으로써 중국 수출통제 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통제요건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보장하게 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또한, 상무부(MOFCOM), 국방을 위한 과학기술산업부(COSTIND)와 세관(GAC) 등의 관련 기관에 핵 관련 기술과 물질의 이전을 통제하도록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의무를 규정한다. 상무부가 국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중국의 통제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추가되었다. 이 개정은 중국 수출통제 당국이 NSG의 개정에 시의 적절하게 따르도록 돕는다. [3,4]

편집자 주: 국무원은 중국 행정기관 중 최고기관이다. 모든 정부부처와 특수 행정청은 국무회의의 지시에 따른다. MOFCOM은 이중용도 수출에 대한 중국의 주요 허가 기관이다. COSTIND와 예하 관청인 중국 원자력 에너지 당국(CAEA)은 핵 물질의 수출에 대한 허가를 가진다. COSTIND는 또한 일부 미사일 관련 수출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허가를 가지고 있다.

고농축우라늄(HEU)의 취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핵물질 수출규정은 수입국 정부가 "수취인이 중국 정부의 동의없이 중국이 공급한 우라늄 농축설비와 기술 또는 이러한 기술에 기반한 모든 설비를 20% 이상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 우라늄은 20% 이상의 U-235로 농축되면 고농축 우라늄으로 간주된다. 농축된 우라늄의 90% 이상이 U-235로 구성되면 일반적으로 무기 등급으로 간주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비롯해서, 우라늄 농축설비와 장비, 조사된 연료재처리 설비와 장비, 중수제조 설비와 장비 및 관련 기술" 등의 품목 수출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이번 개정은 UN 안보리결의안 1540호에 대한 중국의 이행의지를 반영, 핵 테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0년 말에 제정된 양 규정의 당초 목적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개정 규정은 중국의 핵 관련 수출통제의 목적이 "핵 테러"를 막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4,7,8] 더군다나, 양 규정에는 외무부는 물론이고, COSTIND 또는 MOFCOM 등 중국의 허가기관에게 "만약 핵 확산 또는 핵 테러의 위험이 있으면" 해당거래를 중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3,4] 이러한 권한이 제정 당시 규정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중국 당국에게 비 국가 행위자의 수중에 넘어갈 우려가 있는 모든 수출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었다.

본 개정 규정은 또한 UN 안보리결의안 1540 호의 추가 이슈인 환적과 기타 복잡한 전략물자 무역 통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개정 규정은 환적과 경유화물 통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통제 품목의 “경유, 환적, 통과”도 통제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규정은 중국의 원자력 수출 규정이 “기타 보세지역은 물론, 보세창고, 보세구역, 수출자유지역 등 특별 관세 감독과 통제 지역”에서의 수출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3,4] [편집자 주: 보세구역이란 일국의 영토 내에서 특수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공 후 재수출되는 물품의 수출 등 다양한 이유로 특별히 관세가 면제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세 물품”의 수출은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한 수입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개정된 원자력 이중용도 수출규정은 기술의 무형이전(ITT)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기타 형태의 지식 이전도 이중용도 원자력 품목과 관련 기술의 이전에 포함시키고 있다. [4] ITT 는 개인대 개인 간의 지식 이전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 지식 이전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ITT 통제는 전세계적으로 수출통제의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개정 규정은 수출통제 위험도 평가에 관해 세관(GAC)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개정 규정에 의하면, 세관(GAC)은 수출자로 하여금 특정 품목의 수출허가 대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무부(MOFCOM)에서 발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3,4] 또한, 세관(GAC)의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자는 수출품이 중국 규정에 의한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가중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것은 기업체들이 비확산 관련 수출 통제 준수와 관련하여 더 능동적이 될 것을 요구하는 중국의 수출통제체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 이중용도 수출규정은 “포괄적 통제”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의 18 조는 수출자들이 이중용도 원자력 수출에 대한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성해야” 하고, “관련 계약서, 송장, 영수증, 상업서한 및 기타 서류를 최소 5 년간 보관”해야 함을 규정한다. 더군다나 이중용도 수출통제 19 조는 “수출될 장비, 물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핵 확산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핵 테러 목적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했거나 인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상무부로부터 통지받은 수출자는 비록 그 장비, 물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통제 목록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통제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4]

집행 또한 양 규정의 개정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다. 제재 부분도 개정되어 핵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상세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통제품목을 수출하면 상무부(MOFCOM)

는 “위법거래 가액의 2 배 이상 6 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거래가액이 5 만 위엔 (6,500 달러) 미만이면 5 만 위엔 이상 25 만 위엔(32,500 달러)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모든 불법이득은 몰수”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4]

편집자 주: 최근 중국 수출통제제도의 여타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Jay Philip Nash 와 Richard Glen Yong 이 집필한 “동아시아 수출통제 업데이트 : 주요 공급자와 통과 국가들의 지속적 발전”의 16 페이지를 볼 것

출처: [1] “중국, 핵 수출통제에 관한 개정된 규정 제정,” 신화 뉴스, 2006 년 12 월 1 일, <<http://www.china.org.cn/>>. [2] “중국, 핵 수출통제 규율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회결정 알림,” BBC Worldwide Monitoring, 2006 년 12 월 2 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3] “중국 관청은 핵 수출통제 규정의 ‘원문’을 전하다,” BBC Worldwide Monitoring, 2006 년 12 월 2 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4] “중국, 핵 이중용도 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규정 개정” BBC Worldwide Monitoring, 2007 년 2 월 18 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5] “중국 관리가 이중용도 핵 제품 규정에 대해 인터뷰,” BBC Worldwide Monitoring, 2007 년 2 월 18 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6] “중국 집중취재: 중국, 핵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 신화 경제뉴스 서비스, 2007 년 2 월 17 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7] “핵 수출통제에 관한 규정,” 1997 년 9 월 11 일, 1997 년 원문은 <<http://www.nti.org/db/china/engdocs/excon97.htm>>에서 볼 수 있음. [8] “핵 이중용도 품목과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은 의회령 245 호(1998 년 6 월 17 일)를 알림. 1998 년 원문은 <<http://www.nti.org/db/china/engdocs/nduregs.htm>>에서 볼 수 있음.

대만, 이란 및 북한에 대한 무역제한 강화

2006 년 12 월 19 일, 대만의 대외무역국은 이란과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제재와 무역제한을 입법화했다. 이번 대북 규제는 2006 년 10 월 9 일에 있었던 북핵 실험에 대하여 2005 년 10 월에 평양에 부과된 UN제재에 따른 것이다. [편집자 주: 2006 년 10 월 14 일, UN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으로의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기술 유출을 저지하고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재 부과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음. 이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 수출통제 Observer 9 호 페이지 8-9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의 “북핵실험에 따른 UN 결의 및 제재”를 참조] 한편 이란에 대한 무역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에 기인한

것이였다. [편집자 주 : 12 월의 입법 이전에도, 대만 법은 이란과의 무역에서 강력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對이란 규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UN안보리가 부과한 2006 년 12 월 대이란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1]

이번 입법에 따라 대만의 민감 품목리스트, 즉 대만 대외 무역법 상에 “고성능 전략물자”와 “수출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제 리스트에 109 개의 항목이 추가되어 더 강력한 통제가 가해졌다. 추가항목은 레이저 프린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적외선 (나이트비전)쌍안경 등을 포함한 첨단제품뿐만 아니라 나트륨, 수소화물 무가공 알루미늄 합금 등과 같은 이중용도품목들도 포함한다. [1] 이러한 조치로 현재 북한과 이란으로의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이 542 개 품목에 달하게 되었다. [2] 대만의 법에 의하면, 민감 품목리스트의 해당 물품을 수출하고자하는 대만 회사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만에서 북한이나 이란을 그 목적지로하여 환적되는 화물도 이러한 수출통제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2] 대만은 북한과 이란뿐 아니라 중국, 쿠바,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의 나라와 무역에 있어 비슷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1] 최근 대만은 트리폴리의 대량과피무기 프로그램 포기로 리비아를 위의 금수국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1]

[편집자 주] : 중국, 쿠바, 이라크, 수단,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은 모두 대만 수출법상 제한국가 리스트에 포함된다. 대만은 원래 이러한 무역 제한국을 3 가지로 분류했었다. 첫 번째 분류는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제한 국가이고 두 번째 분류는 모든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국가이며 세 번째 분류는 중국 본토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이다. 2003 년 12 월, 대만 외교부는 중국,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쿠바를 제한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분류체제를 수정했다. 대만의 수출통제 정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아시아 수출통제 옵저버 2005 년 2-3 월호 페이지 11-16 <[http://cns. miis.edu/pubs/observer/asian/index. htm](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의 “증가하는 진통 - 대만의 수출통제시스템 개요”를 참조하시오.

이번 입법 조치는 6 개월 전 이란과 북한에 대한 수출 품목과 관련한 수출통제 논의를 시작으로 나온 결과이다. 대만은 2006 년 5 월 민감 품목리스트에 87 개의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5 월에 추가된 항목들은 몇몇 흑연 관련 품목, 화학물질과 화학전구체, 유압식과 공압식 실린더, 관련 부품, 원심분리기, 용수 정화관련 장비, 공작기계, 선반, 집적회로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물품을 포함한다. [편집자 주] : 품목리스트의 업데이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국제수출통제 옵저버, 2006 년 6 월호 페이지

5<<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의 “이란, 북한으로의 수출제한을 강화한 대만”을 참조하시오.

출처: [1] Jessie Ho, “정부, 북한에 대한 수출 강화,” Taipei Times, 2006 년 12 월 21 일, <<http://www.taipetimes.com>>. [2] Sofia Wu, “MOEA 는 對이란 및 對북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 Taiwan Headlines, 2006 년 12 월 21 일, <<http://www.taiwanheadlines.gov.tw>>.

불법 밀매

그루지야에서 압류된 고농축우라늄

2007 년 1 월 25 일, 지난 2006 년 2 월 그루지야의 법 집행관이 올레그 킨차고브를 체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킨차고브는 북 오세티아 지역 출신의 러시아 상인이다. 2006 년 2 월, 러시아인이 관련된 그루지야에서의 80 그램 농축우라늄 압류 사실이 간략히 보도되었지만, 이 보도는 러시아 관리에 의해 사장되었으며 [1] 추가적인 정보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년 1 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킨차고브는 3 명의 그루지야 시민과 함께 100 그램의 고농축우라늄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압류된 물질은 90% 가량 농축된 우라늄-235(U-235)로 밝혀졌다. [2,3] 본 체포는 그루지야 관리가 한 러시아인이 2~3 킬로그램의 농축우라늄을 판매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첩보부예의한 합정수사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터키어를 구사하는 그루지야 비밀 수사요원은 “종교 조직” 출신의 무슬림으로 위장하여 킨차고브와 접촉, 그루지야 수도의 트빌리시에서 만남을 가졌다. 킨차고브와 그 동료들은 2006 년 2 월 1 일에 구금되었고 100 그램의 U-235 가 들어 있는 2 개의 가방도 압류되었다. [2,3]

편집자 주 : 90%의 U-235로 농축된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간주된다. 그 정교성이나 장비의 수득율에 따라 다르지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5~50 킬로그램의 우라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루지야 관리에 따르면 킨차고브는 우라늄의 출처가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라고 진술한 것을 반복하고 정체불명의 공급자에게서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루지야 정부는 고농축우라늄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압류품의 샘플을 미국과 러시아에 보냈지만 정확한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4] 러시아 전문가에 따르면 문제의 우라늄은 89.38%의 U-235 함량을 가진 산화 분말로써 10 여년 전 “러시아의 원자력 산업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미국 에너지부 산하 퍼시픽 노스웨스트(Pacific Northwest)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우라늄에 포함된 U-235 함량이 89.451%이며, [2]

미국은 압류된 물품을 분석하여 그 우라늄이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강력한 증거”인 U-234 와 U-236 의 잔재를 찾아냈다. [2]

이 사건은 러시아가 그루지야의 협력요구에 얼마나 협조하였나를 둘러싸고 모스크바와 트빌리시 사이의 심각한 마찰을 유발했다. 더욱이 몇몇 러시아 관리는 정치적 동기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루지야 정부는 러시아가 킨차고브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관리는 러시아가 그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관리는 그루지야 정부가 보낸 샘플의 양이 너무 적고 질도 나쁘기 때문에 압류된 우라늄의 출처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러시아 정부가 그루지야에게 추가 샘플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5]

킨차고브는 트빌리시에서 비밀 재판을 받고 2006년 7월에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동료 중 두 명은 5년형을, 나머지 한명은 4년형을 선고받았다. [5,6] 2007년 3월 30일 트빌리시 상소법원은 이들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10] 그루지야와 미국 관리들은 이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다. [7] 킨차고브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추가적인 2~3 킬로그램의 고농축우라늄(HEU)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사건은 2003년 고농축우라늄(HEU)를 둘러싸고 미국과 그루지야 국경에서 밀수사건이 일어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미국 국적의 가릭 다나얀(Garik Dadyan)은 미국-그루지야 국경을 통하여 170그램의 고농축우라늄(HEU)의 밀수를 시도하여 2003년 6월 26일 체포되었다. 그 물질은 러시아의 주요 핵연료 공장 시설이 있는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8]

이번 그루지야 우라늄 밀수사건은 남부 캔사스의 핵 거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07년 2월 2일, 그루지야 외교부 장관과 그루지야 미 대사관은 그루지야의 핵 밀수 담당 관리에 대한 미국 장비의 공급과 교육 등의 추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협정을 체결했다. [9]

출처: [1]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루지야의 우라늄 압수를 철회", BBC Worldwide Monitoring, 2006년 2월 6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2] Lawrence Sheets and William J. Broad, "밀수자들의 음모가 우라늄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다," New York Times (인터넷 버전), 2007년 1월 25일, <<http://www.nytimes.com>>. [3] "Gruziya, kotoraya spasla mir" (그루지야가 세계를 구했다.), Lenta.ru; Integrum Techno에서, 2007년 1월 25일, <<http://www.integrum.ru>>. [4] "그루지야 관리曰, 러시아 핵밀수업자들은 조사원들의 우라늄이 러시아로부터 왔다고 함," AP 통신, 2007년 1월 27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5] Pavel Felgenhauer, "러시아는 핵 거래 시장의 확장에 대해서 부인 입장

고수," Eurasia Daily Monitor, 2007년 1월 31일, <<http://www.jamestown.org/edm/index.php>>. [6] "러시아는 우라늄 밀수 조사에 있어서 그루지야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 ITAR-TASS; Integrum Techno에서, 2007년 2월 1일, <<http://www.integrum.ru>>. [7] "그루지야 당국은 몰수된 불법 핵물질 보고", News Center, 2007년 1월 25일, IAEA 웹사이트, <http://www.iaea.org/NewsCenter/News/2007/georgia_material.html>. [8] Elena Sokova 등, "최근 무기들에 따라 우라늄 밀수 사례의 등급이 매겨짐 : 핵물질은 아직 느슨함," 주간 CNS 조사보고, <<http://www.cns.miis.edu/pubs/week/070126.htm>>. [9] "미국과 그루지야, 핵 밀수와 전투를 벌이기 위한 협정에 서명함,"駐그루지야 미국 대사관, 보도자료, 2007년 2월 2일, <<http://georgia.usembassy.gov/releases/2007/release20070202Smuggling.htm>>. [10] "그루지야의 법정은 러시아 우라늄 밀수 사례에서 유죄판결의 지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인터넷 판, 2007년 3월 30일, <<http://www.ihf.com>>.

콩고 공화국, 핵관련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 조사 요구

2007년 3월 9일, 콩고 공화국은 우라늄을 영국, 남아프리카 및 세이셸에 불법 판매하려한 지하 조직망을 해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콩고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의 수장이자 킨샤사 대학 Cren-K 원자로의 관리자인 포르투나트 루무 바딤바니-마투(Fortunat Lumu Badimbani-Matu)와 원자력연구센터장인 베레 뱌바 파울린(Bere Bemba Paulin)이 체포된 후에 발표된 것으로, [1,2,3] 시망가 무크바 (Tshimanga Mukeba) 검찰관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우라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밀거래를 기획”했다. 또한 수년간 상당량의 우라늄이 킨샤사 원자로에서 사라져왔다. [4,5,6] 이들이 체포된 후 정부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다수의 대중 매체들이 이 체포가 핵 물질의 밀수가 아닌 콩고 정부 내의 정치적 이유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6,7] 두 사람은 사흘 후에 석방되었지만 콩고 과학연구부 장관인 실바누스 무쉬(Sylvanus Mushi)에 따르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7]

편집자 주 : 킨샤사 대학 원자로는 1950년대 미국이 지원하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 구상의 일환으로 콩고 공화국에 제공되었다. 벨기에 정부가 1958년 최초로 아프리카에 이 원자로를 건설하였고 이는 TRIGA(훈련, 조사, 동위, 일반 원자력)용 원자로였다. 1967년, 아프리카 통일기구는 미국의 원자로 지원 동의와 함께, 킨샤사 지방에 핵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1988년, 콩고는 원자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원자로는 1992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필수교체부품 수출금지과 함께 폐쇄되었다. 콩고에는 우라늄 매장지가 많이 있으며 콩고산 우라늄은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공격한 최초의 핵무기에 사용되었다.

무쉬 과학기술부 장관은 체포된 후, 포르투나트 루무가 외국 기업과 불법 협상을 벌여서 정부의 고발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무쉬는 포르투갈 루무가 콩고 원자력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영국 브링클리 마이닝(Brinkley Mining)사와 맺은 최근의 계약이 범죄 사업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6] 2007년 3월 8일에 완료된 거래로 인해 브링클리사는 콩고의 주요 우라늄 매장지에 대한 단독점적 개발권을 갖게 되었다. [9] 그러나 콩고 고위 정치인이자 前 콩고 과기부 장관인 제라드 카만다와 카만다(Gerard Kamanda Wa Kamanda)에 의하면, 포르투갈 루무와 브링클리사 간의 거래는 합법적이다. [6,7] 2006년 11월 7일부로 발표된 이 회사의 이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브링클리 중역들은 거래에 대한 양해각서를 서명하기 전에 카만다와 포르투갈 루무와 회견을 가졌다. 카만다는 본 체포는 포르투갈 루무가 협정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16]

정부는 킨샤사 원자로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우라늄의 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콩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략 100 개 정도의 우라늄 막대가 한 개의 원자로에서 사라졌다. 이 “우라늄 막대”는 농축된 우라늄 연료봉(fuel rod)으로 보여진다. [3.4.5.6] [편집자 주 : 우라늄은 약한 방사능 물질이므로 강한 방사능 분산 장치(Radiological Dispersion Device)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상당량(수십 mg)을 흡입 또는 섭취하면 중금속의 중독작용으로 인해 신장 등 신체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킨샤사 원자로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고도로 농축되지 않았거나 원자력 무기에 연료로 사용될만큼 충분한 양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천연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80% 농축 우라늄의 40~50 킬로그램이 필요하다. 킨샤사 원자로에서 추출된 우라늄 막대는 기껏해야 20% 이하의 우라늄이 5~6 킬로그램 정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자 주 : 콩고 공화국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 문제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면 2007년 4월 WMD Insights 지에 실린 피터 크레이일(Peter Crail)과 존 베르제나스(Johan Bergen)가 작성한 “콩고 공화국에서의 핵 안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우라늄 밀수 보고”를 참고 바람.
<http://www.wmdinsights.org/I14/I14_AF1_UraniumSmuggling.htm>

출처: [1] Eddy Isango, “콩고 정부관리, 우라늄 판매로 체포,” AP 통신, LA Times(인터넷 판)에서, 2007년 3월 7일, <<http://www.latimes.com>>. [2] Eddy Isango, “콩고 당국, 불법 우라늄 판매 네트워크가 해체되었다고 밝히다,” AP 통신, i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인터넷 판), 2007년 3월 9일, <<http://www.ihrt.com>>. [3] Peter Crail와 Johan Bergen, “우라늄 밀수 혐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핵 안보 문제 제기,” WMD Insight, 2007년 4월호, <http://www.wmdinsights.com/I14/I14_AF1_UraniumSmuggling.htm>

>. [4] “콩고, 유실된 우라늄에 대해 체포,” BBC, 2007년 3월 8일, <<http://news.bbc.co.uk/2/hi/africa/6430031.stm?ls>>. [5] “콩고 민주공화국; 최고 핵에너지 관리 체포,” World New Digest, 2007년 3월 22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6] “‘콩고의 핵연구원 체포,’” New Tang Dynasty TV online, 2007년 3월 16일, 동영상 링크는 <http://www.ntdtv.com/xtr/en/2007/03/16/a_48754.html>에서. [7] “해방된 콩고 민주공화국 ‘우라늄 고리’ 사람들,” BBC, 2007년 3월 13일, <<http://news.bbc.co.uk>>. [8] 콩고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연혁은 다음을 참조. “콩고 특별 무기들,” Weapons of Mass Destruction, GlobalSecurity.org, 2007년 3월 27일 입력, <<http://www.globalsecurity.org/wmd/world/congo/index.html>>. [9] “영국 기업이 핵 연구, 개발, 운영 양해각서 서명,” BBC Monitoring Africa, 2007년 3월 12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10] “찰나적인 채굴 PLC - DRG 업데이트,” Financial Times Information, 2006년 11월 7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일본 야마하 모터社, 對중국 무인항공기 불법수출혐의로 벌금형

2007년 3월 19일,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추 즉결 심판소는 검사의 약식 기소에 대해서 이중용도 무인 헬리콥터(RMAX L181)를 허가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한 야마하 모터社에 백만엔(8,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

시즈오카와 후쿠오카현의 경찰서와 일본 경산성(METI)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특별대책본부는 야마하社가 통제 품목인 무인 헬리콥터를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관련된 (이 사실을 야마하도 알고있었다고 한다.) 중국 업체에 수출하려 시도한 증거를 발견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야마하는 이 헬리콥터가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 2007년 2월 23일 경찰은 항공부서 과장인 카주오 우치야마, 항공 부서 수석직원 아키히코 수즈키와 타카후미 이타가키 등 3명의 고위 간부를 체포했다. [2] 그러나 2007년 3월 16일, 고소된 3명이 유죄를 인정한 후, 검사는 이들을 풀어 주고 직원 개인이 아니라 야마하 모터社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록 이들 세명이 헬리콥터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더라도, 이 세명이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사측의 입장이다. [4,5]

무인 헬리콥터(RMAX)는 카메라가 장착된, 농약살포용의 회전식 헬리콥터로서 원격조종이 가능하다. 야마하는 이 헬리콥터는 기술적 한계때문에 군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제의 무인 헬리콥터(RMAX) 모델에는 위성 항법장치(GPS)가 장착되어 있고, 프로그램 가능한 무인항공 능력이 있으며, 생화학 무기를 채울 수 있는 분무 카세트 탱크가 있기 때문에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야마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마하가 이중용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거라 주장했다.

2005년 8월, 일본 경산성은 중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도쿄의 다른 회사를 수사하던 중 압수한 서류를 후쿠오카 현 경찰로부터 입수한 이후, 야마하의 수출활동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6] 이 서류에는 야마하가 베이징 BVE 테크놀로지社라는 중국 항공촬영 회사로의 불법수출(이는 200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감)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담고있다고 한다.[6] 야마하는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9대의 무인헬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7]

2005년 12월 21일, 야마하는 또다시 무인 헬리콥터(RMAX)를 중국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8] 나고야 세관이 이 헬기 수출 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선적을 중단시켰다.[6] 수출 시도 후인 12월 22일과 23일에, 경산성은 야마하 본부에서 현지조사를 벌였다. [8] 수사관들은 야마하사와 BVE 사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문제의 헬기가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밝혀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수사관이 압수한 회사 내부기록으로 2003년 12월부터 이루어진 BVE 직원과 야마하 모터 임원 간의 서신왕래가 폭로되었으며, 이 서신에서 중국 구매자는 무인 헬리콥터(RMAX)가 중국 군대에 전달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9] 수사관들은 또한 무인 헬리콥터(RMAX)가 중국인민해방군 시설에서 비행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웹페이지가 BVE 웹사이트에 링크된 것을 밝혀냈다. [9] 야마하는 특별대책본부가 수사를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BVE가 중국인민해방군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2004년에 열린 회담에서 이미 BVE 직원들이 야마하 임원에게 중국인민해방군은 야마하 헬기를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으며, 100여기의 무인 헬리콥터(RMAX)를 구입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린 바가 있다.[9.10] 더군다나, 야마하가 협상을 위해 중국에서 BVE를 만났을 때, 중국인민해방도 역시 미팅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야마하가 BVE 사원들에 게 헬기 사용법을 전수할 때 중국인민해방군도 참석했다고 믿고 있다.

편집자 주 : 조사의 발단과 무인 헬리콥터(RMAX)의 이중용도 능력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 정보를 위해서는, "무인 헬기의 중국 불법 수출은 일본의 수출통제 인식 부족을 보여줌" 국제 수출통제 옵저버, 2006년 2월, 4-5쪽 <http://www.cns.mis.edu/pubs/observer/index.htm> 을 참고할 것.

일본 당국이 본 사건에 쏟은 노력을 고려할 때, 일본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이 비교적 가벼운 이유는 불명확하다. 검사측이 야마하가 헬기의 군용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야마하는 수출 통제 위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수출통제 자율준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야마하 모터는 일본 무역통제를 준수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자율 준수 부서를 설립한 바 있다.[11]

출처: [1] "법정, 헬기 중국 수출에 대해서 야마하에 백만엔 벌금 부과," 교토 월드뉴스, 2007년 3월 20일; OSC 문서 JPP200703200969080 에서. [2] "일본, 對중국 수출로 3명 체포,"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년 2월 24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에서, <<http://www.lexis.nexis.com/>>. [3] "무인 헬기의 불법 수출에 대해서 야마하 기소," 지지 통신, 2007년 3월 16일; OSC 문서 JPP20070316969080 에서. [4] "Yamaha hatsu yakuinra shobun horyuu, kaisya ha ryakushiki kiso fusei yuushutsu misui" (야마하 모터 직원들은 처벌받지 않음. 회사는 수출위반 시도로 기소), 아사히 신문, 2007년 3월 16일, <<http://www.asahi.com/>>. [5] 코조 미조구치, "일본 검사들, 헬리콥터 사건에서 야마하 모터의 관리들을 고소에서 누락," AP 통신, 2007년 3월 23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에서, <<http://www.lexis-nexis.com/>>. [6] "야마하 모터, 중국 업체로의 헬기 판매에 대해서 일체 검거," 아사히 신문, 2006년 1월 23일; OSC JPP20060123969021 에서. [7] "중국 기업에 팔린 야마하 헬기," 아사히 신문, 2006년 1월 24일; OSC JPP20060124969005 에서. [8] "야마하 모터, 헬기 중국 불법 수출에 대해서 일체 검거," 교토 월드뉴스, 2006년 1월 23일; OSC JPP20060123969068 에서. [9] "PLA 경기의 야마하 어워드," 아사히 신문, 2007년 2월 26일, <<http://www.asahi.com>>. [10] "100 헬리콥터 소유를 위한 시장에서의 PLA" 아사히 신문, 2007년 3월 1일, <<http://www.asahi.com>>. [11] 야마하 모터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yamahamotor.co.jp/news/2007/03/16/comment.html>>.

국제지원 프로그램

카자흐스탄, 세관 현대화에 대한 EU 프로젝트 완료

2006년 12월 4일, 카자흐스탄의 세관통제위원회(CCC)의 Astana 본사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세관통제위원회(CCC)와 유럽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세관통제위원회(CCC) 개혁과 현대화"에 대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기술원조(TACIS) 프로그램에 의해 유럽연합이 후원하고 EuroCustoms가 시행했다. [1,2] [편집자 주 : EuroCustoms는 동유럽에 대한 기술 지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1년 유럽연합 회원국이 설립한 유럽연합세관 집행부의 비영리 컨소시엄이다. 파리에 소재한 EuroCustoms의 임무는 유럽연합 협력 국가 내의 세관 집행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유용한 전문

지식과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그들의 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3]

2006년 2월에 정식으로 발족된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이 “법 집행과 무역진흥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기준에 따른 효과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한 세관 서비스”를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교육훈련과 노하우(Know-how) 전수 등 프로젝트의 예산은 총 730,000 유로(982,000 달러)에 달하며 세관통제 위원회(CCC)에 필요한 장비에 340,000 유로 (457,000 달러)가 추가 지출되었다. [1,2,4]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체를 두지 않으면서 세관 통제를 개선하자는 기치 아래,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세관 관련 법 규정 검토, 국제공항에서의 국제 기준에 따른 “위험 분석과 선택 관리 (Risk Analysis and Selectivity Control)” 적용, “통관 후 심사” 및 관련 입법 강화,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의 개발, 세관통제위원회 훈련센터의 역량과 교수법 강화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1,4]

편집자 주 : “위험 분석과 선택 관리”란 초민감한 선적만 집중 관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안배하도록 하는 통제 방식이다. “통관 후 심사”란 세관에서 보관중인 화물을 인도한 이후 진행되는 세관의 관리 또는 심사를 의미한다. 각 심사는 보통 평판 좋은 회사에 위임되며, 각 거래건 별로,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된 수출입건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 심사는 세관 사무소나 회사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 통관 후 심사는 세관 통제를 대폭 간소화시킨다. 세관 통관대기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화되었고 거래자들은 물건이 도착 후 신속하게 하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세관 절차에서 물품은 도착시 국경이나 입국장에서 통제되었고, 처리에 수일이 걸렸으며 부정 행위나 분쟁이 발생시 때때로 수주일이 걸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완료되고 세금 및 관세 지급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물품은 세관에 계속 보관되어왔다. [1,5]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에 파견된 유럽위원회 대표단의 대변인인 알무트 브룬크홀트(Almut Bru-nckhort)는 지난 10년간 EU가 카자흐스탄 세관 현대화에 2백만유로(2.7백만달러) 가량을 투자했다고 언급했다.[2] 2006년도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유사한 세관 개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제공했다. 2006~2008년 동안 TACIS가 지원한 중앙아시아의 세관 개선 프로그램에

소요된 총 비용은 9,400,000 유로(12,600,000 달러)이다.[1,4]

출처: [1] “EU 세관 개혁 프로젝트의 폭로,” 보도자료, 2006년 12월 1일,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카자흐스탄 대표,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웹사이트, <<http://www.delkaz.cec.eu.int/pr/eng/proj/first.php?a=news&p=1&obj=757&c=all>>. [2] “EU는 카자흐스탄 세관의 현대화를 위해서 2백만 유로 투자,” 2006년 12월 4일, 카자흐스탄 투데이 뉴스, <<http://eng.gazeta.kz/>>. [3] 유로 세관 웹사이트, <<http://www.eurocustoms.org/>>. [4] “신 TACIS 프로젝트는 세관의 개혁과 현대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정부의 노력을 도울 것,” 보도자료, 2006년 2월 23일,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카자흐스탄 대표, 키르기스와 타지키스탄 웹사이트, <<http://www.delkaz.cec.eu.int/pr/eng/proj/first.php?a=news&p=2&obj=206&c=all>>. [5] “세관 절차—통관후 감사,” UNCTAD Technical Note, 2005년 10월 5일, <http://r0.unctad.org/ttl/technicalnotes/TN05_PostClearanceAudit.pdf>.

미국, 핵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확대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 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NNSA)은 다수의 국가들과 함께 핵, 방사능 물질의 불법 이전을 막기위한 조치로서 방사능방지설비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NNSA의 SLD 프로그램 (Secondary Line of Defence)의 일환이다.

[편집자 주] NNSA는 미국 에너지부의 부속기관으로 2000년에 창설되어 정부의 비확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다. [1] 1998년에 시작되어 2000년에 NNSA로 이관된 SLD 프로그램은 러시아, 발트해,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의 주요 통과국가와 지중해 지역에서 핵물질과 기타 방사능 물질들이 국경통과, 철도, 항공, 선박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것을 방지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NSA는 SLD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 방사능방지설비를 유지 및 구축하고, 참가국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비의 사용과 유지뿐만 아니라, 핵과 방사능 물질의 탐지, 확인, 금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2]

2006년 11월 13일, NNSA는 슬로베니아 코퍼港에 방사능 탐지 장비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핵과 방사능 물질을 검색하는 용도로 고안되었다. 2005년 4월, NNSA와 슬로베니아 세관 행정부는 공동으로 방사능 탐지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 기술전문가들은 지역 세관 직원들에게 시스템 이용법과 경보(alert)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오고있다. [3]

2006년 12월 29일, NNSA의 SLD 사무소와 슬로베니아 연방 세관은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서, 미국 정부는 슬로베니아 국경 곳곳에 방사능물질 탐지설비와 통합 통신설비를 구축하고 지역 세관원을 교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탐지설비가 구축될 구체적인 장소는 양해각서 체결시에 정해지지 않았으며, NNSA와 슬로베니아 세관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최근(2007년 2월 9일) 미국 NNSA와 국토안보부 관세와 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파나마정부와 국제 해양교통을 통한 방사능 물질의 밀매를 방지를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미국의 양정부기관이 이렇게 합의하게 된 이유는 이 원칙이 NNSA의 거대항구핵탐지구상(Megaport Initiative)과 CBP 컨테이너안보 구상(CSI)의 실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5]

[편집자 주] CSI는 세계 각지로부터 미국 영해로 들어오는 고위험 컨테이너를 가능한 신속하게 조사, 검사함으로써 세계 주요 항구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CSI는 현재 해외 50개 항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CSI 아래에서 미국정부는 특정 최소기준을 만족하면서 미국으로 상당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를 가진 국가들과 제휴하고 있다. NNSA의 거대항구핵탐지구상은 미국, 설치국 또는 미국 동맹국 등에 적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과 방사능 물질 화물의 검사가 허가된 주요 항구에 방사선 감지장치를 공급하여 CSI를 보강한다. 이 구상은 현재 6개국에서 다양한 단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약 30개의 국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2,5]

출처 [1] "NNSA에 대하여," 미국 에너지부의 NNSA 웹사이트, <<http://www.nnsa.doe.gov/aboutnnsa.htm>>. [2] "국방 프로그램의 세컨드라인" NNSA 웹사이트, <<http://www.nnsa.doe.gov/na-20/sld.shtml>>. [3] "슬로베니아에서 가동중인 방사성 탐지 장비," 2006년 11월 13일, NNSA 웹사이트,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6/PR_2006-11-13_NA-06-43.htm>. [4]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 선적을 탐지하기 위한 미국과 슬로바키아의 공동 노력," 2006년 12월 29일, NNSA 웹사이트,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6/PR_2006-12-29_NA-06-53.htm>. [5] "미국과 파나마, 핵 밀수와 전쟁," 2007년 2월 9일, NNSA 웹사이트,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7/PR_2007-02-09_NA-07-04.htm>.

키르기스스탄, 수출과 국경통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지원 수락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 美-키르기스스탄 수출통제 협력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케크에 위치한 국가 세관 검열구역(SCI)에서는 두 번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06년 11월 28~30일,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수출통제센터는 물품식별도구(PIT) 교사 양성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PIT를 사용하여 지방 세관공무원을 다른 세관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훈련된 공무원들은 키르기스스탄 전역 세관에서 유사한 교육 세미나를 열어 PIT 강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1] 2007년 2월 1~2일, SCI 훈련센터와 수출통제센터는 합동으로 세관통제 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의 실용적 측면을 다루는 또 다른 PIT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역세관소의 5명을 포함한 20명의 세관 검사원들도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 SCI 훈련센터와 수출통제센터 출신의 지역 강사들이 PIT 훈련 모듈을 가르쳤다. [2] 미국무부가 관리하는 수출통제와 국경안보 프로그램(EXBS) 후원 하에, 2003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개발한 PIT는 WMD의 확산 방지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기반으로한 자체 진도 설정식 교육과 국경에서의 선적 감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게다가 사진이 포함된 통제품목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하고 있다. [3]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최근 유럽위원회로부터도 국경통제 지원을 받고 있다. 2006년 12월 11~15일, 일련의 통합국경관리(IBM)적 접근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IBM은 안전한 국경을 유지하고 국제법의 요구를 따르면서도 허가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촉진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국경 기관 활동의 조직과 지도를 가리킨다. [4,5,6]

IBM 워크숍은 남부지역의 오쉬 공항, 오쉬 국경보호과견대, 잘랄라바드 세관에서 EC 후원의 중앙아시아를 위한 국경관리프로그램(BOMCA)과 중앙아시아 마약활동프로그램(CADAP)의 주관 하에 열렸다. (두 프로그램은 유엔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 행사는 SCI 훈련센터와 협력하여 개최되었고 세관, 국경, 식물위생(phytosanitary), 전염(sanitary-epidemiological) 및 수의(veterinary) 통제에 종사하고 있는 오쉬, 바트켄 및 잘랄라바드 세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IBM 내의 이와 유사한 훈련이 일찌기 북쪽지역 추이, 이작-쿨 및 나리노블 라스노의 다른 국경 지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4,5]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과견된 EC 대표단의 수장인 아드리안 반델 미르(Adriaan van der Meer)대사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경서비스 의장인 콜로넬 자키르 틸레노브(Colonel Zakir Tilenov)가 오쉬 국제공항 훈련 워크숍에 참석했다. 오쉬에서 반델 미르 대사는 최근에 조직된 마약탐지견 부대를 출범시키고 새로 개조된 키르기스스탄 국경 서비스 지역훈련센터의 건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프로젝트는 모두 BOMCA 의 재정지원을 받았다.[4,5]

편집자 주: BOMCA 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고취하고 주변 국가를 통한 불법 거래를 감소시키고 중앙아시아 국경을 통한 사람과 합법물자의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BOMCA 의 세부 목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지역관리 능력을 유럽의 우수한 사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CADAP 은 마약소비와 마약 밀매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장하는 중앙아시아의 개발 지향적 마약통제전략을 후원하고자 한다.

출처: [1] 키르기스 공화국의 세관 검사 뉴스, 2006 년 12 월 1 일, <http://www.customs.gov.kg/content/news90/>. [2] 키르기스 공화국의 세관 검사 뉴스, 2007 년 2 월, <http://customs.gov.kg/content/news102/>. [3]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발간 2005 회계연도 활동 연례 보고서,"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 년 5 월호, pp.14-16.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4] 키르기스 공화국의 세관 검사 뉴스, 2006 년 12 월 1 일, <http://www.customs.gov.kg/content/news95/>. [5] "EC 사절단, 남 키르기스 공화국에 위치한 EC-UNDP BOMCA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장소 방문," BOMCA 웹사이트, 2006 년 12 월 11 일, <http://bomca.eu-bomca.kg/en/news/?news=67>. [6] "통합된 국경 관리," 운송과 무역을 위한 세계 촉진 협력 웹사이트, 2005 년 6 월, <http://gfppt.org/uploadedFiles/7488d415-51ca-46b0-846f-daa145f71134.pdf>. [7] CADAP 웹사이트, <http://cadap.eu-bomca.kg/en/areas>.

국제수출통제체제

2006 년 국제수출통제 체제 동향 개요

2006 년 주요 다자간 비확산 체제인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바세나르체제(WA)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과 그 이동을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체제들은 또한 기술의 진보, 시장의 흐름, 국제 안보의 발전과 흐름을 맞추기 위해 각 지침에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다자간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6 년 국제수출통제 체제들에서 취하는 조치의 개요이다.

호주그룹

2006 년 6 월 12-15 일, 호주그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연례 총회를 진행했다. 회의 기간 동안, 호주 그룹 참가자들은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한 잠재적 확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호주그룹 회원들은 금속 niobium 이 화학 무기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 제조 장비의 부분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체제

회원들은 niobium(olumbium 으로도 알려진) 또는 niobium alloys 를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통제에 동의했다. 또한 몇몇의 생물학 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생물학 작용제도 호주그룹 통제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이 작용제들은 two fungi-Coccidioides immitis 와 Coccidioides posadasii-및 리보솜 불활성화 단백질(ribosome inactivating protein)과 같은 two toxins-Verotoxin and shiga 을 포함하고 있다. [1,2] [편집자 주] : Niobium 은 희귀하고 부드러우며 회색의 전성(연성)이 있으며 스테인레스 스틸 및 다른 비철 금속 합금의 구성요소로 쓰이는 금속이다. 부식 방지 물질이고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화학 공정 설비에 쓰이는 금속관, 금속전선, 금속막대, 금속관을 만드는데 쓰인다. [3]

호주그룹은 유통업자들에 의한 민감품목 수출을 통제하는데 있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중개 통제의 모범사례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갖기로 합의했다. 호주그룹 회원국들은 중개 통제 강화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의도하고 있는 그룹 및 국가들의 더욱 교묘해지는 획득 시도에 대응하는데 유용하다고 합의하였다. 통제 대상 장비에 라벨링하는 것이 중고장비의 거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역시 총회에서 거론되었다. 단 UN 안보결의안 1540 호(UNSCR 1540)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개정 결의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장비와 물질의 사용과 전용을 통제하고 확산활동을 불법화 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지지했다. [1]

총회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 장비, 물질, 기술의 이중용도와 관련, 호주그룹의 조치가 국제적인 수출통제 기준의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 호주그룹의 대외 활동 성과를 인정했다. 총회 동안, 참가자들은 2007 년의 대외활동 전략에 합의하고 활동 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호주그룹은 참가자들 간의 정보 공유의 시의적절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05 년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것에 합의했다. 총회는 호주그룹의 web -site 에 있는 통제 품목 정보를 확대, 공유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이 web-site 는 UN 의 5 가지 공식 언어로 제공된다. [1]

미사일기술통제체제

2006 년 10 월 2~6 일 제 21 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총회가 덴마크 외무부 정치국장인 리젤로테 플레스넬(Liselotte Plesner) 의장 주재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비확산 정치 외무부의 덴마크 대사의 특별보좌관인 페르 피셸(Per Fisher)이 다음 총회까지 MTCR 의장으로 확정되었다. 체제 회원국들은 2007 년 4 월 MTCR 20 주년에 맞춰 미사일

확산에 관한 국제 회의를 코펜하겐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덴마크의 계획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4]

총회에서 MTCR 회원국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전 세계 미사일 실험과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의 미사일 확산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북한과 이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 1695, 1696 결의문이 MTCR 수출통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고 그 결의안이 제기하는 요구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현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품목, 재료, 물자, 기술의 이전을 막자는 결의안의 요구에 주목했다. 각국은 입법을 통해 결의안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들은 확산 우려 단체와 활동들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이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동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결의안들의 미사일 수출통제규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는 또한 UNSCR 1540 에 대한 지지를 재표명했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MTCR 부속서에 관한 몇 가지 변동사항에 합의했다.

- 첨부 ITEM 3(추진체 부품 및 장비) : 무인항공기(UAV)에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의 포함 범위를 유효탑재중량(payload)과 상관없이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첨부 ITEM 4(추진체, 화학 구성제 및 추진체 생산) : 추가적인 연료제까지 포함하도록 통제리스트가 확장되었다.
- 첨부 ITEM 9(계기, 항법장치 및 방향탐지 장비) : 유효탑재중량과 상관없이 사거리 300km 이상인 탄도 미사일, 무인항공기(UAV) 시스템과 관련된 통합 비행계기 시스템과 통합 항법 시스템까지 포함하도록 통제범위가 확장되었다.
- 첨부 ITEM 17(스텔스) : 유효탑재중량과 상관없이 사거리 3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 및 무인항공기(UAV) 시스템과 관련된 측정 장비를 포함하도록 통제범위가 확대되었다.

회원국은 또한 다음 17 가지 연료관련 물질을 MTCR 부속서의 카테고리 2, 4 장(소재)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트라이메틸하이드라진(Trimethylhydrazine)
- 테트라메틸하이드라진(Tetramethylhydrazine)
- 다이알릴하이드라진(N,N diallylhydrazine;N,N)
- 알릴하이드라진(Allylhydrazine)
- 에틸렌 디하이드라진(Ethylene dihydrazine)

- 모노메틸하이드라진 디나이트레이트(Monomethylhydrazine dinitrate)
- 비대칭 디메틸하이드라진 나이트레이트(Unsymmetrical dimethylhydrazine nitrate)
- 하이드라지늄 아지드(Hydrazinium azide)
- 디메틸하이드라지늄 아지드(Dimethylhydrazinium azide)
- 하이드라지늄 나이트레이트(Hydrazinium nitrate)
- 디미도 옥살산 디하이드라진,Diimido oxalic acid dihydrazine
- 2-하이드록시에틸하이드라진 나이트레이트(HEHN) (2-hydroxyethylhydrazine nitrate (HEHN))
- 하이드라지늄 퍼클로레이트(Hydrazinium perchlorate)
- 하이드라지늄 디퍼클로레이트(Hydrazinium diperchlorate)
- 메틸하이드라진나이트레이트(Methylhydrazinenitrate) (MHN)
- 디에틸하이드라진나이트레이트(Diethylhydrazine nitrate) (DEHN)
- 1,4-디하이드라진 나이트레이트(1,4-dihydrazine nitrate) (DHTN)

편집자 주: 개정 MTCR 통제리스트의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mtcn.info/english/MTCR-TEM-2006-Annex-002.doc>> [4]

핵공급국 그룹(NSG)

2006년 6월 1~2일 16차 NSG 총회는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외무부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인 호세 아르투어 데노트 메데이로스(Jose Artur Denot Medeiros)대사 주재로 개최되어, 2005년 6월 오슬로 총회 및 2005년 10월 비엔나 특별총회 이후의 발전사항에 대해 점검하였다. 회원국은 이란에 초점을 맞추어, 확산에 대한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이 핵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추구하고, 통제리스트의 지속적인 검토의 중요성과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물품을 통제할 수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의 위임사항 확대를 환영했다.

회원국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NSG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채택하였다. :

- NSG 내 정보공유를 위한 지침 개정
- NSG 자문그룹(CG)내 추가 규약(protocol) 논의에 대한 길잡이
- 1부 지침에 있는 농축 시설 사용을 위해 특별 제작되거나 준비된 밸브에 관한 지침에 대한 개정

- 민감기술에 관한 NSG 워크숍의 결과를 대외활동(outreach)에 통합시키는 문제 [5]

편집자 주: INFCIRC/254, Part 1 의 NSG 지침은 핵 이용을 위해 특별 설계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물품의 수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항목은 핵물질, 원자로 및 관련 물품으로 재처리 농축을 위한 공장, 핵물질 변환장치, 핵 연료 재처리, 중수생산 및 이와 관련된 기술으로 구성되어 있다.[6]

총회에서 2005 년 7 월 미국-인도 합동 성명에 대해 검토했고, 향후 NSG 와 인도 사이 민간 핵개발 관련하여 가능한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NSG 회원국은 다음 정기자문그룹(CG) 회의에서 이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회원국은 의장 및 트로이카가 비회원국 및 국제단체와 현재의 NSG 대외활동 체제 내에서 계속 접촉하도록 했다.[5] [편집자 주: NSG 트로이카는 전직, 현직, 미래 NSG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세나르 협정(WA)

2006 년 12 월 5~6 일 바세나르협정(WA) 12 회 총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이 총회는 바세나르협정 10 주년 기념으로 호주 대사 Peter Shannon 의 주제로 진행되었다.[7]

총회동안 WA 회원국은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 통제 리스트의 기술적 문구수정, 수치 조정, 정의의 명확화 등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회원국은 WA 전문가그룹과 MTCR 의 기구와 특정 품목의 통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전문가그룹은 또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회원국 및 국제단체와 대외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7]

바세나르협정 총회는 국제적 우려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의 무형이전(ITT)에 관한 문제에 대해 주시하였다. 기술의 무형이전(ITT)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적 전송, 사람을 통한 정보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기술의 무형이전(ITT)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총회는 '무형기술의 이전에 관한 최적관행(모범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무형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법으로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돕기위한 것이다.[9]

총회는 또한 "기본 및 민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에 대한 허가 최적관행(모범기준)"이란 문서를 승인했다. 이 문서는 일반허가 및 허가예외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각 국가의 효율적인 수출통제의 이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무역 간소화 기법이 바세나르협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0]

[편집자주: 수출허가 면제는 수출자로 하여금 수출허가 대신 개별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특정상황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하도록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관심사인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휴대용 방공시스템(MANPADS)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해, 총회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휴대용방공시스템의 비회원국에 대한 수출통제 지침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했다.[7]

2007 년은 WA 회원국의 평가년도로서 WA 체제의 기능에 대한 폭넓은 평가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 총회에서는 이를 위해 WA 의 모든 활동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WA 로 하여금 수출통제체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과 향후 이슈에 대한 대비 상태를 평가할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총회는 또한 그와 관련된 검토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7]

다음 정기 WA 총회는 2007 년 12 월 비엔나에서 열린다. 2007 년 1 월부터 벨기에 대사 Philippe Nieuwenhuys 가 총회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7]

출처: [1] "'2006 년 호주그룹 총회,'" 2006 년 6 월, 호주그룹(AG) 웹사이트, <http://www.australiagroup.net/en/releases/press_2006.htm>. [2] "'수출통제를 위한 생물 작용제 목록, 핵심 목록 1,'" 2006 년 7 월, AG 웹사이트, <http://www.australiagroup.net/en/control_list/bio_agents.htm>. [3] "'니오브 - 원재료와 처리,'" 탄탈륨-니오브 국제 연구 센터, <<http://www.tanb.org/niobium1.html>>. [4]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총회-2006 년 10 월 2~6 일, 덴마크 코펜하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웹사이트, <<http://www.mtcr.info/english/press/copenhagen.html>>. [5] "'NSG 총회, NSG -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 핵 공급국 그룹(NSG) 웹사이트, 2006 년 6 월 2 일, <<http://www.nuclearsuppliersgroup.org/PRESS/2006-07-Brasilia.pdf>>. [6]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핵이전의 가이드라인(INFCIRC/254, Part 1),'" NSG 웹사이트, <<http://www.nuclearsuppliersgroup.org/guide.htm>>. [7]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에 관한 2006 년 바세나르 체제 총회,'" Public Statement, 2006 년 12 월 6 일, 바세나르 체제(WA) 웹사이트, <<http://www.wassenaar.org/publicdocuments/2006/WA%20Plenary%20Statement%202006%20FINAL.doc>>. [8] "'변동사항 요약: 2006 년 12 월 6 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리스트와 방산물자 리스트,'" WA 웹사이트, <<http://www.wassenaar.org/controllists/Summary%20of%20Changes%20-%20Lists%202006.doc>>. [9]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의 시행을 위한 모범 사례,'" WA 웹사이트, <<http://www.wassenaar.org/publicdocuments/2006/ITT%20Best%20Practices%20%20for%20public%20statement%202006.doc>>. [10]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의 기본 리스트와 민감 리스트에 있는 품목의 허가를 위한 모범 가이드라인,'" WA 웹사이트, <<http://www.wassenaar.org/publicdocuments/2006/Best%20Practice%20Guidelines%20-%20for%20press%202006.doc>>.

금수 및 제재

일본정부, 이란에 Seishin 불법 수출금지

2006년 11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일본 기계 제조회사인 Seishin Enterprise Co.가 2000년에 이란에 있는 두 기업에 두대의 single-track jet mills을 불법수출한 것에 대해 수출제재를 가했다. Jet mills은 분말을 제조하는 이중용도 분쇄기계이다. 그것은 본래 식품이나 제약 산업에 이용되지만, 미사일 고체 연료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1,2,3,4]

이 제재는 Seishin에게 수출허가의 발행을 금지한 것으로 2006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2월 4일까지 유효하다. 이것은 경제산업성(METI)이 일본의 기업에 부과한 최장기간의 금지조치이다. 본 제재 이전에는 한 싱가포르의 계열사인 Japan Aviation Electronics Industry사가 미국에서 설계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부품을 1,000개 이상 수출하여 이 부품의 이란으로의 이전을 방조한 혐의로 1991년 받았던 18개월 수출제한처분이 최장기록이었다. [2,4]

일본 조사기관에 따르면, 1999년 5월, Seishin은 이란 정부소유기업의 자회사인 Sanam Industrial Group에 Jetmill을 판매했다. Sanam은 이란의 방위산업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이란방위산업기구(DIO)의 자회사이다. 2000년 11월 Seishin은 또다시 수출허가없이 Jet mill을 이란의 업체에 판매했는데 이번에는 테헤란에 위치한 Khajeh Nassir -Al-Deen Toosi University의 로켓 과학 연구소였다. 이 확인된 두가지 사건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Seishin이 198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란으로 jetmill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수출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5,6,7,8]

Seishin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일본 사법기관이 기업의 본사와 간부들의 가택을 기습수색한 2002년 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6월 다섯명의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2004년 10월 회사의 前의 장이었던 Haruhiko Ueda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전 한국지사장이었던 Akira Kamiya에게 18개월 형이 선고되었다. 회사는 또한 천 오백만엔(US\$124,000)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런 결정들이 도쿄 지방법원에 의해 발표된 것은 2004년 10월, 자세한 사항들이 공개된 것은 2006년 10월이었고 이는 일본 최고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후였다. [9,10,11,12]

편집자 주 : 보고서는 또한 Seishin과 북한의 WMD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연관짓고 있다. Seishin이 1994년 3월에 북한으로 jet mill을 수출한 증거가 있지만, 이 건에 대한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2006년 2월 Seishin 회사의 사무실은 2002년 북한으로 BW(생물무기)관련 장비를 수출했다는 주장이 드러난 뒤 일본 경찰의 수색을 당했다. 수색에서 드러난 추가정보가 필요하면, 2006년 3월판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지 9페이지에 실린 "Japanese Export Controls Under Scrutiny as Reveals of Illicit Transfers Continue"를 참고바람.

Seishin과 그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외환 및 무역법을 강력 집행함으로써 핵무기와 첨단 운반수단 개발 프로그램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들로의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2년동안 일본 대기업들이 국내 수출통제 법을 위반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최근의 Yamaha Motor Co.(6페이지에 관련된 사건 참고)의 경우 이외에도 일본 기계제조회사인 Mitutoyo Corporation의 간부는 2006년 12월 수출통제 위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Mitutoyo 사건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개발에 유용하게 쓰이는 3차원 정밀 측정장비가 이 기업에 의해 2001년 불법적으로 수출되었고 이 사실이 리비아가 2003년 핵비축을 포기한 이후 IAEA에서 파견된 조사관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3,14] [편집자 주 : Mitutoyo 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2006년 10월/11월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지 "Mitutoyo 관리자가 이란으로 핵관련 장비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 참고]

또한, 일본 의회는 벌금의 한도액을 2억엔에서 3억엔(US\$160~250백만불)으로 증가시키고, 수출통제 위반자에 대한 징역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수출통제강화 법률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

출처: [1] "이란으로의 제트 분쇄기 불법 수출로 세신 기업 처벌," 도쿄 지지 통신, 2006년 11월 12일; OSC 문서 JPP20061128969045에서. [2] "일본, 이중용도 수출통제의 보다 강력한 시행으로 선회," OSC Feature, 2006년 12월 26일; OSC 문서 FEA20061226060066에서. [3] "교토: 최고 법원, 조정밀 기계의 불법 수출에 대한 결정을 지지," 교토 월드뉴스, 2006년 10월 12일; OCS 문서 JPP20061012056001에서. [4] "'세신, 그라인딩 기계 이란 선적으로 수출금지,'" Japan Economic Newswire, 2006년 11월 28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5] "일본 기업, 북한에 미사일 관련 장비 수출," Agence France Press, 2003년 2월 2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6] "'세신의 제트 분쇄기 판매는 북한을 원조 Jet Mill Sale Aided N. Korea; MPD 조사는 1994년 미사일 개발장비의 수출을 밝혀냄,'" 요미우리 신문, 2003년 6월 13일, p. 2;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7] "'회사는 장비가 이란 무기 제조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사히 신문, 2003년 6월 16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8] “회사가 1987년부터 장비 수출 협의,” Japan Economic Newswire, 2003년 2월 6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9] “이란 수출에 취해진 조치,” 요미우리 신문, 2003년 6월 13일, <<http://www.yomiuri.co.jp/dy/>>. [10] “일본인, 이란 불법수출로 집행유예 징역형,” Agence France Press, 2004년 10월 15일. [11] ““Seishin kigyo iran fusei yushutsu, kaicho no yuzai kakutei he”” (세신 기업의 이란 불법 수출 유죄판결), Nikkei Net, 2006년 10월 11일, <<http://www.nikkei.co.jp/>>. [12] ““Gaikoku kawase oyobi gaikoku boekiho ni motozuku gyoseishobun nitsuite”” (외환무역법에 의해 행정제재), 보도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웹사이트, 2006년 11월 28일, <<http://www.meti.go.jp/press/20061128003/gaitamehou-p.r.pdf>>. [13] ““사실 : 불법 철단 수출이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 요미우리 신문, 2006년 8월 26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14] ““일본 하원, 반동적으로 북한 경제 제재를 승인하다.”” BBC Monitoring Asia Pacific, 2006년 12월 5일; Lexis-Nexis Academic Universe에서, <<http://www.lexisnexis.com/>>.

국제동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흑해 하모니 구상에 참여

2006년 12월 27일은 러시아와 터키 간 체결된 “흑해 하모니 작전(Operation Black Sea Harmony)” 조약이 발효되는 날이다. 이 조약은 2006년 11월 7일 터키 해군사령관 예너 카라하노글루(Yener Karahanoglu) 장군이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을 때 러시아 해군총사령관 블라디미르 마조린(Vladimir Masorin) 장군과 체결한 것이다.[1,2] 한편, 2007년 1월 17일에는 터키 정부 대표자인 예너 카라하노글루(Yener karahanoglu)와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자인 우크라이나 해군총사령관 이골 테넥(Igor Tenyukh) 중장이 흑해 하모니 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흑해 하모니에 공식 가입 되었다. 이 서명은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 vich) 수상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고위대표단이 터키를 방문하는 동안 성사되었다.[3] 이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터키가 주도하는 구상에 가입한 최초의 흑해 연안국이 되었다.

흑해 하모니 연맹은 흑해 항구의 테러와 대량파괴 위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터키의 주도 하에 2004년 3월에 시작되었다. 당초 이 연맹은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 1540호, 그리고 1566호에 따라 터키 해군이 수행하는 국가적 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2004년 11월 앙카라(Ankara)가 모든 흑해 연안국이 이 연맹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연맹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작전이 시작된 후 터키 해군은 터키 영해를 지나는 선박을 감시하며 의심되는 선박의 선원들을 조사하고 NATO 동맹국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해당 선박에 탑승하는 행위는 선장 또는 기국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1,4,5]

러시아 정부는 오랫동안 흑해 연안의 안보문제에 외부가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으며 흑해 지역의 안보는 인근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러시아의 흑해 하모니 연맹 가입 후 2006년 11월 7일 러시아 해군의 마조린(Masorin) 장군은 흑해 지역의 안보 문제는 흑해 연안국들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 흑해 하모니와 비슷한 성격으로 NATO가 지중해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는 “적극 추진 작전(Operation Active Endeavor)”이 흑해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6] 터키는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하나, 그 이면에는 터키가 보스포러스(Bosporus)와 다다넬스(Dardanelles)를 통치하도록 규정한 1936년의 몽트뢰 조약이 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7]

러시아의 흑해 하모니 연맹 가입에 관한 협상이 종결되기도 전에 러시아 외교부 장관인 세르베이라브로프(Servey Lavrov)는 2006년 6월 7일 또다른 지역 연맹인 BLACKSEAFOR의 회원국들이 흑해 하모니에 동참해줄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8] 그러나 BLACKSEAFOR의 6개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만이 흑해 하모니에 동참하고 있다. [편집자주 : BLACKSEAFOR는 흑해 해군 협동작전 추진조직으로서 터키의 주도 하에 2001년 4월 설립되었으며 불가리아, 그루지야, 러시아,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흑해 연안국들이 회원국으로 있다. [9]

출처: [1] ““O prisoyedinenii Rossiyskoy Federatsii k operatsii “Chernomorskaya garmoniya”” (러시아 공화국의 흑해 하모니 작전에의 접근에 있어서), 보도자료, 러시아연방 외무부 웹사이트, 2006년 12월 29일, <http://www.mid.ru/brp_4.nsf/sps/AD5DED472B264773C32572530041FE57>. [2] ““Rossiya i Turtsiya ukreplyayut vzaimodeystviye na Chernom more””(러시아와 터키는 흑해에서의 협력 강화), November 2006, Rus-Orient news agency, <<http://www.rusorient.ru>>. [3] ““Ukraina i Turtsiya podpisali dva dokumenta o sotrudnichestve v oboronno-promyshlennoy sfere””(우크라이나와 터키, 방산 분야 협력에 관한 2개 각서에 서명), Ukrinform, 2007년 1월 17일; 정부 포탈에서, <<http://www.kmu.gov.ua>>. [4] ““흑해 화합 경영.”” Wikipedia (인터넷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Operation_Black_Sea_Harmony>. [5] ““흑해 화합 경영에 관한 터키의 M.F.A.”” Turkishpress.com, 2006년 8월 10일, <<http://www.turkishpress.com>>. [6] ““Masorin: NATO v chernomorskom regione byt ne dolzhno””(Masorin: there is no place for NATO in the Black Sea region), Vovremya.info, 2006년 11월 7일, <<http://www.vovremya.info>>. [7] ““모스크바 소재 터키 해군 사령관.”” Turkishpress.com, 2006년 11월 7일, <<http://www.turkishpress.com>>. [8] ““Tezisy vystupleniya Ministra inostrannykh del Rossii S.V. Lavrova na “pravitelstvennoy chase” v Gosudarstvennoy Dume””(하원 “정부

발언 시간”에서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인 Sergey Lavrov의 발표내용 요약), 2006년 6월 7일, 러시아 MFA 웹사이트, <http://www.mid.ru/brp_4.nsf/0/04B22C68FB4AA980C3257186004C3DF6>. [9] BLACKSEAFOR 웹사이트, <http://www.blackseafor.org/English/Establishment_Home.asp>.

특별기고

동아시아 수출통제 업데이트 : 핵심 공급국가 및 경유 국가의 계속된 발전

중국, 한국, 홍콩 및 싱가포르를 아시아 5대 무역국에 속하며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2005년까지만 해도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진전은 고르지 못했다. [1] 하지만 과거 2년간 이들 경제권은 일련의 수출통제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수출통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의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은 아시아, 미국 및 국제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전략적 의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확산우려가 크지만 수출 통제가 낙후한 주변 개도국들에게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중국, 홍콩, 한국과 싱가포르 수출통제의 최근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

핵심 동아시아 생산국의 동향

중국: 다음 단계로의 전진

중국은 2002년 처음으로 포괄적인 수출통제규정을 제정한 이후 지난 1년간은 수출통제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 중국에는 제도 즉 법적근거, 집행, 업계와의 관계, 국제협력 및 정치적 약속 등 모든 면에 걸쳐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미시적인 측면과 넓은 함축적 의미의 측면 모두에서 주목할만하다. 아직 중국의 제도에는 더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남아 있고 다소의 실패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확산 수출통제의 꾸준한 발전의 길로 가고 있고 향후에도 이 방향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WMD 관련 품목의 모든 무역 거래를 규정하는 법적근거가 2006년에 바뀌었다. 2006년은 상무부(MOFCOM)와 관세청(GAC)이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허가에 관하여 “항구적 조치”를 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들 조치들은 2003년도의 “임시조치”를 보장하는 한편 중국 수출통제제도에 몇가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항구적 조치는 일부 허가권한을 북경의 상무부 중앙사무소에서 성(省), 대도시 및 특별구역 등 지방사무소로

이전하였다. [2] 이러한 형태의 제도적 이관은 중앙에 집중된 수출 통제 자원을 중국의 무역중심지에 보다 가깝게 하고 주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각계 각층의 기업들에게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민간기업들로서 수출통제 정보에 어둡거나 경험이 없다. 더욱이 2006년도의 항구적 조치에는 캐치올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과, 환적 및 기술이전 통제의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 외에도 2006년 중국정부는 화학 전구체의 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으며 생물학관련 통제리스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했고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대형 민간항공부품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핵관련 물품 및 기술에 관한 통제이다. 2006년 9월 중국은 이중용도의 흑연기술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했다. 2006년 12월 중국은 핵수출 규정을 NSG 통제기준에 보다 가깝게 개정하였으며 2007년 2월 중국 국무원은 핵 이중용도 수출통제규정의 적용 대상에 중국산 수입품의 재생산 및 재이전을 포함시켰다. [7] [편집자 주: 중국의 핵관련 수출통제 최근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핵관련 수출통제 규정 강화” 3페이지를 볼 것.]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간수수출, 중개통제 및 최종용도/사용자 검증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분명한 법적근거를 갖추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중국의 수출통제 분야에 뚜렷한 발전이 있었다. 2006년 12월말, 관세청(GAC)과 상무부(MOFCOM)는 통제리스트를 개정했다. [8] 이와 관련 통제품목별로 HS 코드를 부여했는데, 2006년 11월 현재 통제품목의 약 70%를 HS와 연계하였다. 중국 허가기관과 세관, 기업들에게 있어 아직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도전 과제인 하나 중국 당국은 수출통제 이행 및 집행 강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집자 주: HS는 관세 부과 목적으로 상품과 기술에 숫자를 부과하는 물품의 분류를 위한 국제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HS 코드는 8자리로 되어있다. 중국 HS 체계는 HS 코드에 수출통제 목적으로 2자리를 덧붙여서, 해당 품목에 요구되는 특별 수출허가를 명시한다.] [9]

세관 및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의 강화도 지난해의 주목할만한 점이고 또 하나는 수출통제와 비확산에 대한 고위관리들의 의지 역시 주목할만하다. 이같은 진전은 수출통제가 중국에서 점차 폭넓게 수용되고 있고 보다 깊이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중국 중앙정부와 당 지도부의 지지는 중국의 수출통제 발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가령 작년 8월 상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수출입통제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상무부(MOFCOM), 국방에 관한 과학기술산업부(COSTIND)와 관세청(GAC)을 포함하여 중국의 핵심부처의 대표들과 120 개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8] 요녕성 대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핵 수출통제에 관한 변경내용을 다루었다.[10] 지도부의 지지면에서는, 2006년 2월의 공고에서는 당과 지도부가 중국의 수출통제 이행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 하고 있는점이 강조됐다.[11] 또한 2006년 4월 존 하워드 호주총리가 주최한 연회에서 원자바오 중국수상은 중국이 수출통제체제를 지지하고 집행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2]

이처럼 중국 수출통제체제의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부 좌절도 있었다. 2006년 7월 미국은 행정명령 13382 호(2005)에 의거 5개 중국기업을 제재했다.[13] 동 행정명령은 확산관련 활동으로 의심되는 특별 지정기업의 자산을 동결한다. 2006년 12월에는 2005년 *이란과 시리아비확산법*에 따라 3개 중국기업들에게 미 정부조달 입찰참가가 금지되는 행정제재가 부과되었다.[14] 더욱이 2006년 6월 미국산 품목이 중국에서 군사적 최종용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그러한 이전에 대해 통제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15] [편집자 주: 의견 제시 기간은 2006년 12월에 종료되었고, 최종 규정은 BIS가 2007년 제1기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년 1월 미사일 실험도 일각에서 중국의 비확산 정책 및 관행에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퇴보로 볼 수 있다.[16]

중국은 점진적으로 투명성과 국제협력력을 증진함으로써 2006년과 같은 제도상의 후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특히 EU, 미국, 일본 및 다양한 국제체제의 대표들과 수출 통제에 관한 회의와 교류를 실시했다. 중국은 2006년 3월 영국과 양자간 수출통제 포럼을 결성했으며 이어서 6월에는 EU와의 수출통제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17,18] 중국관리들이 AG 대표단과 협의를 가졌으며[19] 2007년 1월에는 미국, EU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20] [편집자 주: 2007년 4월 현재, 중국은 NSG와 쟁거위원회의 회원국이지만, AG, MTCR, WA의 회원국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작년 이 3개의 체제 모두의 대표들과 만났다.] 중국 수출통제가 '개방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조짐은 작년 9월, 중국이 발표한 집행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포타습 하이드로진 플루라이드를 허가없이 수출한 건에 대하여 위반기업의 명칭과 함께 미화 1,300 불의 벌금이 부과된 처벌 내용과 위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것이다. [21]

한국: 국제수준에 부합 노력

작년 한국은 수출통제체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2002~05년 기간 중 비교적 큰 비중이 큰 한국관련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22] 작년과 금년 초 몇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국제체제의 활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수출 통제 집행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록을 보여줬다.

한국정부는 2006년과 금년 초에 수출통제의 법적근거를 보강했다. 한국은 2006년 4월 생물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 무역 및 운송을 금지했으며[23] 콜레라와 보툴리눔을 포함한 13개 독소 등 54개 미생물 작용제를 통제리스트에 추가했다. 기업들이 이들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

또한 2007년 1월, 한국은 수출통제의 법적인 초석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25]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네 가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허가 권한을 강화했다. 대외무역법은 현재 산업자원부와 기타 관련된 행정기관에 전략물자로 지정된 수출 물품의 허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26] 둘째, 정부는 전략적 수출과 환적 통제 집행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강화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략물자의 이동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전용용도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불법적으로 수출되었을 경우 2)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가 한국의 항구나 공항을 경유하는 국내 혹은 외국물품에 관하여 한국에 협조를 요구할 경우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하여 환적되는 경우. 셋째, 한국 정부는 중개 통제에 관하여 규정했다. 대외무역법은 현재 한국의 회사가 수출입국 사이의 전략적 교역에 있어서 중개자로 중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외국산 전략물자를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품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는 등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벌칙을 강화했다. [27]

한국은 2006년에 다각적인 비확산 활동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했다. 9월에 한국과 미국 군대는 생물무기의 탐색을 위해서 메릴랜드주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28] 며칠 후 미국 국무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조사 관련 훈련을 제공했다.[29] 마지막으로 10월에 한국은 확산안보구상(PSI)의 부분으로 시행했던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주도의 반확산 훈련에 참가했다. 계속된 미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북한과의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30]

2006년 한국 당국은 수출통제를 위반한 수개 업체에 대해 기소 또는 처벌하였다. 5월 산업자원부는 세 개의 회사에 대해 전략물자의 거래를 3개월 동안 금지시켰고 2005년과 2006년에 중국, 방글라데시, 멕시코, 미국에 AG 통제 화학제품을 수출한 3개 회사에 경고서를 통지하였다.[31] 10월에는 15톤의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를 확인되지 않은 중동의 국가에 밀수출한 자를 체포하였고[32]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2월에 7개 회사의 임직원을 미얀마로 무기생산 장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33]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법 집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당국은 2006년 2건의 허가받지 않은 이중용도품목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였으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34]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완료된 위법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범죄를 시도한 자도 역시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위의 예들은 수출통제에 관련된 범죄를 시도한 경우와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이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비확산 수출통제의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범죄를 시도한 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핵심 통과/환적 허브의 발전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발전 : 많은 무역량과 통제의 균형을 위한 노력

홍콩특별행정구(HKSAR)은 무역량의 상당히 증가했던 지난 수년에 걸쳐 강력한 수출 통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홍콩은 화물물동량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제 2위의 항구이다(2006년 초 싱가포르에 추월 당함). 홍콩특별행정구(HKSAR) 내외로의 전체 무역량 중 절반이상은 본토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35] 비록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나 독자적인 법체계와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옹저버는 증가하는 홍콩의 대중국 무역량과 활동이 수출통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주목해왔다. 2007년초에는 중국과 홍콩은 새로운 국경통과지역의 중국측 지역에 세관 및 입국관리 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36] 홍콩은 주요 아시아-태평양 교역국들과의 수출통제현안에 대해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일본과 홍콩은 수출통제에 관한 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2006년 5월에는 수출통제집행을

주제로 미국과 11번째 양자 논의를 가졌다.[37] 이러한 협력활동은 2006년의 불법 이전 적발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38] 2006년 홍콩특별행정구(HKSAR) 세관은 147, 636개의 화물을 검사하여 513만 미국달러 상당의 전략 물자를 압수하였다. 또한 6,305건의 수입 수출 허가를 검토하였고 226건의 전략물자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여 52명을 체포하였으며 183백만 미국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39]

홍콩의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관점에서, 최근 수년동안 홍콩특별행정구(HKSAR) 통상산업부(TID)는 수차례에 걸쳐 명확한 설명(Clarification) 및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시스템을 갱신했다. 2004년 4월, 통상산업부(TID)는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이 추가되는 여러 형태의 수출유형을 위한 전문절차에 관한 고시를 발행했다.[40] 비록, 홍콩이 다자간체제 공식회원국이 아니지만, 2006년 7월 홍콩특별행정구(HKSAR)는 바세나르 협정을 비롯한 다른 다자간체제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제목록을 변경했다.[41] 또한, 일부 다른 상품 및 기술은 특별한 수출허가절차와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빠른수출허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동 절차에는 디지털 컴퓨터와 암호화기술에 대한 특성화된 통제가 있다. 회로와 전자부품을 위한 신속과정이 있고 TID에 "Air Transshipment Cargo Exemption Scheme"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등록된 기관에 의해 항공편으로 환적되는 몇 품목들을 위한 신속 과정도 있다. [42,43,44] [편집자 주: 항공이전계획은 통상산업부 (TID) 의장으로부터 검증된 단체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류 2번품목 즉, 방산물자, 민감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에 대해 허가를 면제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콩특별행정구(HKSAR) 당국은 항구에 최상의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적/세계적 물류 허브의 역할을 유지하려한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홍콩 특별행정구(HKSAR)의 실행 능력 역시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지되어 왔다.[45] 그러나 홍콩특별행정구(HKSAR)에 있어 여전히 존재하는 기술이전 및 중개통제에 대한 틈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통제품목 이전에 대한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역할과 처리 절차는 상당히 진보된것에 반해, 사전이전행동 (협상, 중개) 및 기술의 무형이전은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은 특히 홍콩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을 포함한 지식의 이전과 상업거래량을 생각해 볼 때 특히 그러하다.

싱가포르: 국제무역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무역 통제 향상

싱가פור는 2006년 전략물자무역통제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 동시에 당국은 싱가포르의 국제

무역위상에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46] 이러한 균형은 3 가지 기본 방향으로 분명히 나뉜다. 첫째, 싱가포르세관은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시스템의 분명한 변화를 공표했다. 둘째, 위법사건의 경우 중개무역 통제가 활발히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싱가포르세관은 허가받은 무역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2007 년 사전기업지원 전략이 뒤따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싱가포르는 또한 다른정부와 비확산노력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다.

2006 년 9 월, 싱가포르세관은 두 가지의 국가전략물자 무역수출허가시스템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2008 년, 1 월 1 일, 싱가포르는 NSG, AG, MTCR, WA 의 통제리스트 전체를 채택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고성능컴퓨터, 통신 장비 및 해양추진체등을 포함한 1,000 개의 새로운 품목이 국가통제리스트에 추가될 것이다.[47] 유사하게, 싱가포르 세관은 합법적무역에 대한 문서처리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3 번째 유형의 수출허가인 일반적 제한허가를 만들었다. 당국은 내년의 새로운 통제리스트의 채택의 앞서서 2007 년 1 월부로 일반적 제한허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48]

싱가포르는 2006 년 중개무역통제에 대한 이행과 집행 사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2005 년에 20,000 AKMS 공격 라이플을 불가리아로부터 시리아로 중개무역을 시도한 두 남자를 기소했다. 2006 년 6 월, Colin Mak Yew Long 은 BR Chaandrran 과 중개무역 거래를 공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49] 싱가포르 세관에 전략물자 중개무역거래자로 등록되지 않은 Chaandrran 에게는 2006 년 10 월에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그해 11 월, 18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0]

2006 년에 수차례, 싱가포르 당국은 무역을 촉진하는 동시에 전략물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7 월, 세관관리들은 이 두 요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주요 난관 중 하나로 지적했다.[51] 이점을 거듭 지적하며 Lee Hsien Loong 수상은 싱가포르는 주요 항구이며 “배에 실린 수많은 화물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무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비된 제도가 필요하다. 모든 컨테이너를 검색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47]

싱가포르 회사들이 수출허가 시스템 및 국가통제목록의 다가오는 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6 년 9 월 싱가포르 세관은, 2007 년 일련의 산업계 대상의 대외 상담 및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싱가포르 세관은 허가 받은 품목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2006 년

2 건의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1 월에, 세관은 종래의 보세창고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세금(GST) 이 0%인 보세창고제도를 소개했다. 기존 보세창고제도 하에서는, 수입품 중 적어도 80% 가량의 물품이 재수출되어야만 세금이 없는 보세창고에 보관될 수 있었다. 새로운 제도는 2 번 및 3 번 유형의 창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80%요건을 없애고 싱가포르 세관에 개별통관서대신 무세의 지불통관을 가능케 하는 3 단계 창고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단계 시스템 하에, 무세금의 창고사용 신청자는, 정확한 재고목록과 기록절차과정 및 진보적이고 정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세관 관리자는 신청자를 방문하여 해당 무세금 창고를 검사할 수 있다.[52] 2006 년 1 월 싱가포르 세관은 선적인, 화물운송인, 당국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TradeX-change)을 발표했다. 또한 세관은 국가의 자동정보 공유와 문서진행 시스템인 ‘Trade Net’이 국가자동정보 공유가 간소하고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53] 세관은 2007 년 10 월 TradeXchange 를 구현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6 년과 2007 년 초반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6 년 5 월 수출통제이슈에 관한 미국과 최초 양자협상을 체결하였고 10 월에는 PSI 훈련 “Leading Edge”에 참가하였다.[54,55] 싱가포르 정부는 2006 년 3 월과 2007 년 2 월에 UN 1540 결의안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아세안 지역포럼”을 미국과 공동 개최하였다.[56]

최근 발전에 대한 설명 및 동향

4 개국(중국,한국,홍콩,싱가포르) 수출통제체계의 최근 발전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것은 법적기반과 수출허가시스템 절차에 관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공고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6 년에 기술이전통제, Catch-all 그리고 통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중국과 대한민국은 전략물자환적을 통제하는 법적 기반을 수립하였다. 이 4 개국의 수출통제체계는 관련물품을 추가하고, 제품통제목록에 추가된 사항을 공지하며 허가절차 및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런 변화들의 최종결과는 4 개국의 경제수출통제법, 규정, 그리고 허가체계가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4 개국 정부는 모두 2006 년 전략물자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 이 국가들 모두 비교적 명확한 수출통제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초로 수출통제 위반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홍콩, 싱가포르는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했다.

지난 12 개월동안 이 4 개국 수출통제체제의 발전에 대한 몇 개의 사례가 있다. 2004 년 4 월에 채택된 UN1540 결의안은 모든 국가들이 효율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시행하고 수출통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를 요구한다. 4 개국 정부는 UN 1540 결의안 보고서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국의 수출통제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2006 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였다. 중국과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특히 자국의 수출통제노력에 관해서 UN 1540 결의안의 중요성을 표명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결의안에 따라 수출통제시스템을 최근 개정하였다. [57,58]

작년에 중국, 홍콩, 대한민국, 싱가포르는 비확산 이슈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국제적 협의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수출통제 발전을 이끄는 국제적 노력의 예로서 ①미국, 유럽과 함께한 중국 국제 회의; ②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육훈련 그리고 미국과의 양자협약; ③미국, 일본, 홍콩의 상호 협의; ④WMD 확산 관련 2006/2007 ASEAN 지역포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확산행위와 지하 핵무기 실험, 2006 년 10 월에 발효된 UN1718 결의안에 따른 제재들은 동아시아의 수출통제에 대한 긴장과 우려수준을 한층 고조시켰다. 결국, 국제 무역과 사업의 활성화, 특히 이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외국계 회사의 사업은, 전략기술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범규범과 수출통제기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1] "아시아의 수출통제 시스템 발전 : 2005 년의 불균등 과정,"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5 년 12 월/2006 년 1 월호, p. 2,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2]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수출입 허가 관리를 위한 명령 29 호 조치," 중국 상무부(MOFCOM)와 세관(GAC), 2005 년 12 월 31 일, <http://www.fdi.gov.cn/pub/FDI_EN/Laws/law_en_info.jsp?docid=51195>. [3] "'시행령 7 호, 화학 전구체 수출입 관리에 관한 조항," MOFCOM, 2006 년 9 월 21 일, <http://www.fdi.gov.cn/pub/FDI_EN/Laws/law_en_info.jsp?docid=65468>. [4] "중국, 생물학 수출통제 강화," 인민일보 (인터넷판), 2006 년 7 월 29 일, <<http://english.peopledaily.com.cn/>>. [5] "민간 항공기 부품 수출 분류의 관리에 관한 명령 6 호 (2006 년)," MOFCOM 웹사이트 <<http://exportcontrol.mofcom.gov.cn>>. [6] "중국, 핵 수출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을 공표," 신화 뉴스, 2006 년 12 월 2 일, <<http://www.china.org.cn/english/>>. [7] "중국, 핵 이중용도 수출 강화," 신화 뉴스, 2007 년 2 월 17 일, <<http://www.chinadaily.com.cn/>>에서 볼 수 있음. [8] "'Shangwubu, haiguan congshu gonggao 2006 nian di 96 hao gongbu <<liang yong wuxiang he teshu jingchukou wukezhengguanlizimu>>, (상무부 세관부서, Notice No. 96 (2006)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통제 리스트" 발표)" MOFCOM 웹사이트, 2006 년 12 월 31 일,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ar/200612/20061204194436.html>>. [9] Jonathan E. Davis,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수출통제, 2005 년, 조지아대학 국제무역안보센터(CITS) 웹사이트, pp. 26-27,

<<http://www.uga.edu/cits/documents/pdf/CITS%20China%20Final.pdf>>. [10] "핵연관련 사업 단위를 위한 수출통제훈련 개최에 관한 공지," MOFCOM 웹사이트, 2006 년 10 월 23 일,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w/200610/20061003500572.html>>. [11]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 시스템 행정개혁 보충공지" MOFCOM 웹사이트, 2006 년 4 월 6 일, <<http://hntb.mofcom.gov.cn/aarticle/lingzxxz/200604/20060401848278.html>>. [12] "호주 PM의 환영 연회에서 웬 수상의," 駐호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웹사이트, 2006 년 4 월 3 일, <<http://au.china-embassy.org/eng/xw/t243804.htm>>. [13]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재무부, 이란의 미사일 확산을 억제하는 미국과 중국 기업을 지정," 보도자료 No. JS-4317, 2006 년 6 월 13 일,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4317.htm>>; 또한 OFAC을 볼 것, "비확산: 재무부 금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2007 년 2 월 16 일 업데이트,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programs/wmd/wmd.pdf>>. 행정명령 13382 에 따라서 제재된 5 개의 기업은 베이징 얼라이트 기술 유한회사 (ALCO), LIMMT 경제무역 유한회사, 중국 장성 산업 회사(CGWIC), 중국 국영 정밀 기계 수출입 회사 (CPMIEC), 그리고 CGWIC의 미국 대표 사무실이다. 2006 년 8 월 15 일, 장성 항공사 또한 행정명령 13382 에 따라 제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들은 2006 년 12 월 해제되었다. 핵위협조치(NTD)를 볼 것, "중국과 중국 업체에 대한 미국 비확산 제재" 2007 년 1 월 업데이트, <<http://www.nti.org/db/china/sanclist.htm>>. [14] "'이란, 시리아 비확산 법,"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2007 년 1 월 11 일 업데이트, <<http://www.state.gov/t/isn/c20760.htm>>. [15]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통제에 대한 개정과 명확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제도의 새로운 공인," 연방관보 71 권 129 호, 2006 년 7 월 6 일, <<http://edocket.access.gpo.gov/2006/pdf/E6-10504.pdf>>. [16] Marc Kaufman and Dafna Linzer, "중국은 공격위성 미사일 테스트를 비난했다," 워싱턴 포스트, 2007 년 1 월 18 일, p. A01, <<http://www.washingtonpost.com/>>. [17] 중국 외외 정보실, "중국 군대의 중요한 국제적 변화," 2006 년 중국 국방, 부록 II, 2006 년 12 월 29 일, <<http://www.fas.org/nuke/guide/china/doctrine/wp2006.html#app2>>. [18] "중국-EU 수출통제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 협의가 베이징에서 열림," 2006 년 6 월 7 일, MOFCOM 웹사이트,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ap/200607/20060702594747.html>>. [19] "'Zhongguo--Aodaliya jituan di san lun chu kou guanzhi cuoshang zai jingbanxing,'" (중국-호주 그룹은 베이징에서 수출통제 협의에 관한 제 3 차 원탁회의 개최), MOFCOM 웹사이트, 2006 년 7 월 6 일,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ar/200607/20060702594160.html>>. [20] "중국-EU 무역 및 수출통제 허가 관리 세미나는 청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MOFCOM 웹사이트, 2007 년 2 월 2 일,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ar/200702/20070204363334.html>>; 중-미 세미나에서 상무부 수출관리 차관 Christopher A. Padiilla의 연설을 볼 것, 중국 선전, 2007 년 1 월 29 일, <<http://www.bis.doc.gov/News/2007/Padilla02012007.htm>>. [21] "'Shanghai haiguan dui shanghai zhitong gongsi wei gui chukou mingan wu xiang shishi xingzheng chufa,'" (상하이 세관은 상하이에 근거를 둔 즈통社를 민감 수출규정 위반으로 처벌), MOFCOM 웹사이트, 2006 년 9 월 9 일,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ar/200610/20061003349374.html>>. [22]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출처를 참고할 것: "한국 기업, 리비아에 이중용도 품목을 제공하여 고발,"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4 년 4-5 월호, p. 10,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한국은 신경작용제의 북한 무허가 수출을 허용,"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4 년 10-11 월호, pp. 7-8,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2004 년 리뷰: 동아시아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4 년 12 월/2005 년 1 월호, p. 5,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미국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서 우려,” 연합뉴스, 2005 년 5 월 16 일; FBIS 문서 KPP20050516000019 에서; 유소정, “전략물자 위반자는 처벌될 것,” 코리아 헤럴드, 2005 년 6 월 9 일; FBIS 문서 KPP20050609000035 에서; “한국 기업은 2004 년과 2005 년에 핵물질 취득에 이란을 지원,”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5 10 월호,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김장원, “한국 기업은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제재 직면,” 동아일보, 2005 년 9 월 12 일; FBIS 문서 KPP20050911000133 에서. [23] “한국은 2007 년부터 생물무기 개발 금지,” 연합뉴스, 2006 년 11 월 12 일; FBIS 문서 KPP20061112971005 에서. [24] “한국은 2007 년 생물 작용제 통제를 강화,” 연합뉴스, 2006 년 12 월 28 일; FBIS 문서 KPP20061228971049 에서. [25] 대외무역법(대한민국), (개정전), UN 안보리결의안 1540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법령 데이터베이스,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APCITY/UNPAN011483.pdf>>. [26] 2007 년 1 월 개정 전 대외무역법에는 단지 산업자원부가 “만약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필요가 간주되는 경우” 전략물자의 수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개정전) 21 조-1 항을 볼 것. [27] 대외무역법 개정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대외무역법 개정,” <http://korea.assembly.go.kr/abo/zin_read.jsp?cha=22&boarditemid=1000006118>. [28] “미국-한국, 합동 WMD 훈련,” 조선일보, 2006 년 9 월 7 일; FBIS 문서 KPP20060907971132 에서. [29] “미국 방위 전문가, 한국 관리에게 핵 조사에 관한 훈련 실시,” 연합뉴스, 2006 년 9 월 11 일; FBIS 서류 KPP20060911971029 에서. [30] Tanalee Smith, “한국은 관찰자들을 비확산 훈련에 보냈다; 북의 핵 시설에 대한 가능한 관찰,” AP 통신, 2006 년 10 월 30 일. [31] “한국은 기업들을 전략물자 수출규정 위반으로 처벌,” Asia Pulse, 2006 년 5 월 29 일; “기업들 전략물자 수출 규정을 위반으로 처벌,” 연합뉴스, 2006 년 5 월 28 일. [32] “전략 핵물질 수출로 한국인 구속,” 조선일보, 2006 년 10 월 13 일; FBIS 문서 KPP20061013971038 에서. [33] “한국 기업들 미얀마에 무기 공장 설립,” 조선일보, 2006 년 12 월 7 일; FBIS 문서 KPP20061207971049 에서. [34]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한국은 불법 이전을 중단 - 수출통제 시행은 여전히 느슨,”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 년 10-11 월호, pp. 3-4,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을 볼 것. [35]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로 싱가포르를 홍콩을 대체,” Taipei Times, 2006 년 1 월 18 일, <<http://www.taipetimes.com>>; “홍콩의 중국 수출, 재수출 증가,” 신화 뉴스, 2006 년 1 월 23 일; 미국 상무부 국가기술정보원(NITS) 편집 및 배포. [36] 미국 국무부, 미-홍콩 정책 법 보고, 2006 년 4 월 1 일, <<http://hongkong.usconsulate.gov/utills/eprintpage.html#IV>>. [37] 2006 년 BIS 업데이트 컨퍼런스에서 수출집행 차관 Daryl Jackson 의 연설, 2006 년 10 월 17 일, Washington, DC,

<<http://www.bis.doc.gov/News/2006/JacksonUpdate2006.htm>>. [38] “Soviet Made Fighter Bound for U.S. Seized,” South China Morning Post, 2006 년 4 월 5 일; Lexis-Nexis Academic에서, <<http://web.lexis-nexis.com/universe>>. [39] Customs and Excise Tax Department, HKSAR, “전략물자 무역통제의 집행,” Notice Board, 2007 년 1 월 <http://www.customs.gov.hk/chi/notice_strategic_c.html>. [40] 무역산업부 (TID), HKSAR, “전략물자의 수출입,” 전략무역 통제 공람 7/04 호, <http://www.stic.tid.gov.hk/print/english/circular_pub/stc7_04.html>. [41] TID-HKSAR, “7 월 18 일부터 개정된 전략물자 통제 리스트,” HKSAR 정부 정보센터 Centre, 2006 년 7 월 7 일, <<http://www.info.gov.hk/gia/general/200607/07/P200607070101.htm>>. [42] TID-HKSAR, “디지털 컴퓨터의 수출입,” 전략무역 통제 공람 11/06 호, 2006 년 7 월 31 일, <http://www.stc.tid.gov.hk/english/circular_pub/2006_stc11.html>. [43] TIDHKSAR, “암호 제품의 수출입,” 전략무역 통제 공람 12/04 호, 2004 년 4 월 16 일 <http://www.stc.tid.gov.hk/english/circular_pub/stc12_04.html>. [44] TID-HKSAR, “전략물자통제리스트 개정,” 보도자료, 2006 년 5 월 4 일, <<http://www.info.gov.hk/gia/general/200605/04/P200605040092.htm>>; TID-HKSAR, “2007 년 전략물자등록을 위한 항공 환적화물 제한조치,” 전략무역 통제 공람 12/2006 호, 2006 년 10 월 10 일, <http://www.stc.tid.gov.hk/english/circular_pub/2006_stc12.html>. [45] 류만명, “홍콩에 대한 워싱턴의 전혀 새로운 시각,” The Standard, (홍콩) (인터넷 판), 2006 년 8 월 15 일, <<http://www.thestandard.com.hk/>>. [46] 2005 년, 싱가포르의 총 수출가액은 GDP의 2 배 가량. “싱가포르” 참조,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sn.html>>. 싱가포르의 항구는 전 세계 컨테이너 환적 작업량의 20 퍼센트 가량을 다루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환적 허브이다. PSA 싱가포르 터미널 웹사이트를 볼 것, <<http://www.singaporepsa.com>>. 2005 년 42300 만 톤 이상의 화물이 이 항구를 통과했다. “항구 통계: 총 화물”을 볼 것, 싱가포르 해운청 웹사이트, <<http://www.mpa.gov.sg/infocentre/portstatistics/portstats.htm>>. [47] “싱가포르는 항구 안보 리스트를 강화,” Lloyd’s List, 2006 년 9 월 12 일, <<http://www.lloydslist.com/ll/home/index.htm>>. [48] “수출, 환적 및 통과를 위한 전략물자 통제 리스트 확대,” 싱가포르 세관 보도성명, 2006 년 9 월 10 일, <http://www.stgc.gov.sg/stgc/index.jsp?catName=90&artName=522&url=/html/11_Press_Releases.html>. [49] Khushwant Singh, “싱가포르인은 시리아에 2 만 정의 라이플 총을 공급하려 했음,” Straits Times, 2006 년 6 월 27 일, <<http://www.straitstimes.com/>>. [50] “허가없는 전략물자 증가로 유죄판결”

* *Mr. Ryan Cathi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WMD export control issues. It is published monthly for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mmunity by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check sources and verify facts, CNS cannot guarantee that accounts reported in the open literature are complete and accurate. Therefore, CN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Statements of fact and opinion expressed i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imply the endorsement of the editors,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r the U.S. Government. Copyright 2006 by MIIS. May be free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proper citation.

Editor-in-Chief

Sonia Ben Ouagrham

Associate Editors-in-ChiefDauren Aben
Stephanie Lieggi**Senior Consultants**Daniel Pinkston
Leonard S. Spector**Co-Editor**

Alexander Melikishvili

Associate EditorsTanat Kozhmanov
Jing-dong Yuan**Contributors**Linsie Brown
Dave Kim
Leah Kuchinsky
Stephanie Lieggi
Ingrid Lombardo
Erik Quam
Kazutaka Sakurai**Reviewers**Markus Binder
Richard Cupitt
Jean du Preez
Dennis Gornley
Elina Kirichenko
Carlton Thorne
Lars Van Dassen
Raymond Zilinskas**Copy Editors**Maria Haug
Katya Shutova**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1111 Nineteenth Street, NW, 12th Floor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 464-6000; Fax: (202) 238-9603
email: intexcon@miis.edu